

[별표 29] < 개정 2015.4.17., 2016.3.30., 2018.7.10., 2024.3.27., 2025.10. . >

간단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(제2-10조의3 관련)

1. 생명보험 : 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보험상품 중 같은 항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상품

2. 손해보험
 - 가. 화재보험
 - 나. 특종-책임
 - 다. 특종-상해-여행
 - 라. 특종-상해-기타
 - 마. 특종-종합
 - 바. 특종-권리
 - 사. 특종-기타
 - 아. 보증보험(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에 한한다)
 - 자. 장기동물

3. 제3보험 : 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보험상품 중 같은 항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상품